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16호
------	------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홍태의 의원 등 6명
제출연월일	2024. 02.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호	제16호
--------------	------

발의연월일: 2024. 02. 21.

대표발의자: 홍태의

공동발의자: 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이상구
윤금숙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적용대상 기관(안 제5조)
- 다. 구매 촉진(안 제6조)
- 라. 업체 정보의 제공(안 제7조)
- 마. 상공인의 책무(안 제9조)
- 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안 제10조)
- 사. 협의회 기능(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조례안예고: 2024. 02. 00 ~ 02. 00.(5일간)

□ 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2. 논산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

제6조(구매촉진)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2.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5조 해당 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상공인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1조(협의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제5조의

공공기관 등에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홍태의 의원 등 6명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7. 7. 26.>